

입사후보자 운영기준

□ 입사후보자 제도 운영

-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, 해당 선발단위의 최종 합격 예정자 결정 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 조치 가능
 - 케이워터기술(주) 인사규정 제16조(결격사유)에 해당 하는 경우
 -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 - 최종 합격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

【 입사 포기 확인서 미제출,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】

입사 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 포기 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

- 근무일이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확인서 제출 없이 공지된 입사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경우